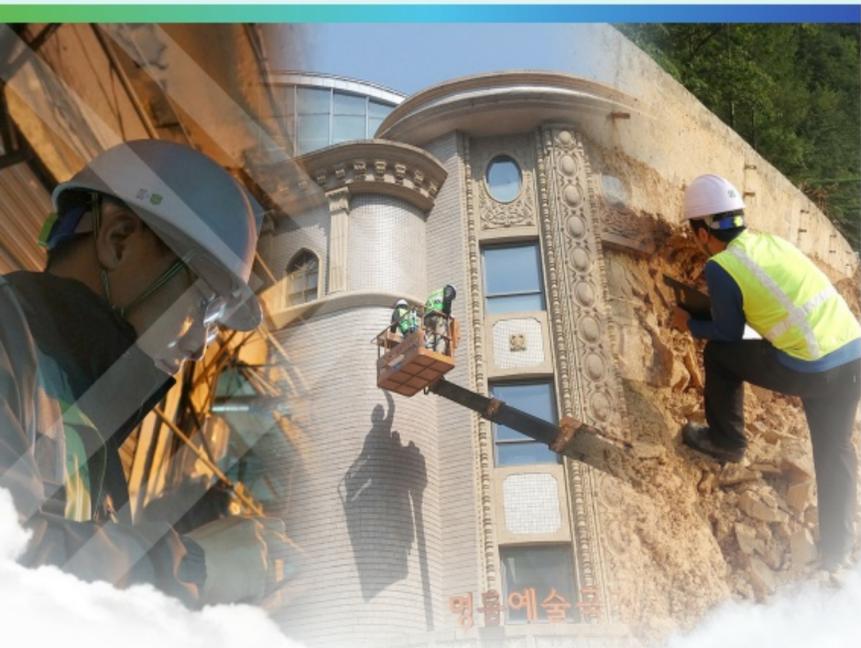
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대상

제3종시설물 지정(해제) 절차 및 안전관리방법 안내



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(FMS)
<https://www.fms.or.kr>

시스템 문의: 1588-8788

제3종시설물이란?

■ 제3종시설물이란 무엇인가요?

-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지정·고시된 시설물

■ 제3종 시설물의 범위

1. 토목분야

구분	대 상 범 위
교량	·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- 「도로법」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~ 100m 미만 교량 -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-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-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
터널	·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-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 터널 - 농어촌도로의 터널 - 법 1,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
육교	·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
지하차도	·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
기타	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·터널·항만·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

2. 건축분야

구분	대 상 범 위
공동주택	·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~ 15층 이하 아파트 ·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㎡ 초과, 4층 이하 연립주택
공동주택 외 건축물	·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,000㎡ 이상 ~ 5,000㎡ 미만의 판매시설, 숙박시설, 운수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장례식장, 종교시설, 위락시설, 관광휴게시설, 수련시설, 노유자시설, 운동시설, 교육시설 ·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㎡ 이상 ~ 1,000㎡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, 종교시설, 운동시설 ·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㎡ 이상 ~ 1,000㎡ 미만의 위락시설, 관광휴게시설 ·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~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,000㎡ 이상 ~ 30,000㎡ 미만의 건축물 · 5,000㎡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 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 ·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공공청사
기타	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

비고

-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제외한다.
- 터널 중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은 제외한다.
-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.
- 노유자 시설 중 단독·공동주택, 1종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.
- 대형건축물 중 건축법 제2조(건축물 용도)제2항제21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.
-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. 다만,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.
-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.
-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여러 시설이 대형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각 시설의 연면적 합계로 계산한다.

제3종시설물 지정(해제) 및 안전관리 절차

■ 제3종시설물 지정(해제) 절차[지정기관]



■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절차[관리주체]



- 안전취약시설물, 중대결함 조치 결과 등
※ 지침 제103조 참고
- ※ 점검 가능한 기술자가 없는 경우 대행업체를 통해 수행해야 함
- ※ 자세한 사항은 각 항목의 번호로 확인 가능

■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모두 지정되나요?

- 모두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안전등급, 위험도, 시설물의 경과년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됩니다.
※ 지침 제101조 참고

제3종시설물의 안전점검

■ 제3종시설물은 어떤 점검을 수행하나요?

-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, 법)시행령 제8조(안전점검의 실시 등)에 따라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, 영) 별표3 따른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안전등급	A·B·C 등급	D·E 등급
정기안전점검	반기에 1회 이상	1년에 3회 이상

* 해빙기 전(2·3월), 우기 전(5·6월), 동절기 전(11·12월)

- 단, 필요시 정밀안전점검, 긴급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■ 정기안전점검은 누가 수행하나요?

-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관리주체의 소속직원이 있는 경우 직접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영 별표5의 분야(건축, 토목분야로 구분)별 자격요건과 교육요건을 갖춘사람을 책임기술자라 합니다.

구분	기술자격 요건	교육요건
정기 안전점검	·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, 건축 또는 안전관리 (건설안전) 직무분야의 초급 기술자 이상일 것 · 건축사	·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(토목, 건축 분야)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

- 단,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같음 가능합니다.

■ 점검가능한 기술자가 없는 경우?

-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소속직원이 없는 경우 대행업체를 통해 점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- 법 제26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, 안전진단전문기관* 또는 유지관리업체**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* 안전진단전문기관: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

** 유지관리업체: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유지관리업자
 ※ 안전진단전문기관/ 유지관리업체는 FMS 접속 후 [관련업체] 메뉴에서 검색 가능합니다.

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?

■ 지정기관으로부터 지정통보(공문)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관리주체는 아래절차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.

1 FMS 접속 및 로그인

www.fms.or.kr

- 임시아이디 또는 기존아이디로 FMS 로그인 및 회원가입 (임시아이디를 모를 경우 지정기관 문의)

2 시설물관리대장 제출

지정·고시된 후 1개월 이내

- 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(지정기관에서 미리 입력한 시설물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완·수정 제출)

3 설계도서 제출

지정·고시된 후 1개월 이내

- 법 제9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설계도서 제출(평면도, 실측도면 등)

4 시설물관리계획 제출

매년 2월 15일까지

- 법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(지정·고시 다음연도부터 제출)

5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

점검완료일 30일 이내

- 법 제11조, 제17조에 따른 시설물점검결과 제출 (지정·고시 다음반기부터 제출)

6 시설물유지관리 결과 제출

유지관리 완료 시

- 보수·보강 계획 및 결과보고 (법 제6조 및 제24조), 중대한결함 (법 제22조), 긴급안전조치(법 제23조), 위험표지의 설치(법 제25조) 등

* 상세메뉴얼: [FMS] - [커뮤니티] - [자료실] 참고

1 FMS 접속 및 로그인

■ 지정기관(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)으로부터 제3종시설물 지정통보·고시된 경우 지정기관에서 입력한 제3종시설물의 정보를 FMS ID로 이관 받아야 합니다.

FMS (https://www.fms.or.kr) 홈페이지 접속

기존 FMS ID로 통보받은 경우

기존 ID로 로그인

임시 ID/PW를 통보받은 경우

통보받은 임시 ID로 로그인하여 정식회원가입 또는 기존 ID와 통합

통보된 ID를 모를 경우

통보를 한 지정기관에 문의하여 임시 ID 확인

2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(FMS 시설물 등록)

의무사항

제3종시설물로 지정·고시된 경우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합니다

관련법령

법 제9조,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 등

제출시기

제3종시설물로 지정·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

제출방법 1

FMS 로그인

팝업창에서 3종시설물 [선택]

시설물 관리대장 작성

시설물관리대장 [승인완료] 여부확인

시설물관리대장 [승인요청]

제출방법 2

FMS 로그인

상단메뉴 [시설물관리]

좌측메뉴 [신규시설물등록]

시설물관리대장 [승인완료] 여부확인

시설물관리대장 작성 후 [승인요청]

통보된 3종시설물 [선택]

* 신규시설물 등록에 제3종시설물이 뜨지않는 경우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

3 설계도서(평면도, 실측도면 등) 제출

의무사항

제3종시설물로 지정·고시된 경우 관리주체는 설계도서(평면도 등)를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. ※ 자료분실 등으로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을 작성하여 FMS에 제출

관련법령

법 제9조,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 등

제출시기

제3종시설물로 지정·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※ 실측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측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기산은 산입하지 않음.

제출형식

Tiff 표준형식(CCITT Group4), PDF(PDF/A-1)

제출방법

FMS 로그인

상단메뉴 [설계도서/보고서]

좌측메뉴 [설계도서 제출]

설계도서 승인여부 확인

설계도서 업로드 후 [제출]

화면 하단 [작성제출]

4 시설물관리계획 제출

의무사항

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(시설물관리계획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합니다 ※ 연 단위 시설물관리계획 수립

관련법령

법 제6조, 영 제3조 및 규칙 제3조 등

제출시기

매년 2월 15일까지 FMS를 통해 제출 ※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제출

제출방법

FMS 로그인

상단메뉴 [안전및유지관리]

좌측메뉴 [유지관리계획보고]

[승인요청]

시설물별 점검진단계획 작성

유지관리계획 [총괄]작성

* 기본계획: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

5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

의무사항

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3종시설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관련법령

법 제11조 및 제17조, 영 제8조 및 제13조 등

실시시기

반기 1회, 안전취약시설물(D·E 등급)은 매년 3회

제출시기

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를 통해 제출 ※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실시

제출방법

FMS 로그인

상단메뉴 [안전및유지관리]

좌측메뉴 [유지관리실적보고]

[승인요청]

시설물별 점검진단결과 작성

시설물명 선택 후 [새로작성]

6 시설물유지관리 결과 제출

유지관리의 결과보고

의무사항

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·보강을 시행한 경우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FMS를 통해 제출

관련법령

법 제41조, 영 제29조

중대한결함 사후관리 보고

의무사항

중대한결함이 발생한 경우 사용제한, 위험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2년 이내 보수·보강 착수,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를 완료하여 FMS를 통해 결과 제출

관련법령

법 제22조~제25조, 영 제18조~제20조 등

안전 취약시설물 관리 보고

의무사항

점검결과 긴급한 보수·보강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, 위험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FMS를 통해 결과 제출

관련법령

법 제16조, 제23조~제25조 등